

2012년도 중견연구자지원사업(핵심연구)

# 신규과제 FAQ

2012. 5.

교육과학기술부  
한국연구재단

# CONTENTS

---

1. 2012년 핵심연구사업 운영방향 .....	1
2. 신청자격 관련 사항 .....	2
가.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신청 요건 .....	2
나. 사업 참여 제한 .....	2
다. 연구참여자 구성 및 자격요건 .....	4
라. 비전임 교원의 연구과제 신청 .....	4
3. 신청 관련 사항 .....	5
가. 중견연구자지원사업 수행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 .....	5
나.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연구자의 신규과제 신청 .....	5
다. '최초 지원과제'와 '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'의 차이 .....	5
라. 동일 사업 내 동시 신청 .....	5
4. 연구계획서 관련 사항 .....	7
가. 연구자 번호 확인방법 .....	7
나. 위탁연구과제 편성 .....	7
다. 교수급 연구원의 참여연구원 참여 .....	7
라. 신청용 연구계획서 영문 작성 .....	7
마. 기관코드 확인방법 .....	7
바. 연구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연구업적 등록방법 .....	7
사. 연구비 입력시 자동합산 .....	7
아. 대표적 연구업적 기술방법 .....	7
자. 연도별 연구비 기재 방법 .....	7
차. 연구계획서 중 연구내용 작성 분량 .....	8
카. 신청서 간접비 작성 여부 .....	8
타. 연구계획서 표지 중 전공 작성방법 .....	8
5. 연구비 관련 사항 .....	9
가. 인건비와 직접비 편성비율 .....	9
나.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 산출방법 .....	9
다. 미지급용 인건비 계상방법 .....	9
라. 학생 인건비 풀링제 정의 및 해당여부 .....	9
마. 학생 인건비 풀링제로 계상한 인건비의 잔액 처리 .....	9
바. 학생인건비 man/month 투입총량은 작성방법 .....	9
사. 연구수당은 계상방법 .....	10
아. Post-doc의 인건비 지급기준 .....	10
자. 공동연구의 연구비 지급(공동연구원) .....	10

# 1. 2012년 핵심연구사업은 어떻게 운영되니까?

➡ 2012년 핵심연구사업은 아래와 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.

구분	중견연구자지원사업		비고
목적	과학기술 전문야(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 포함)의 창의성 높은 개인연구 지원을 통한 우수 기초연구능력 배양 및 우수연구인력 양성		
지원분야	과학기술 전문야(인접 인문사회과학 분야 포함)		
신규예산 (백만원)	상반기 공모	하반기 공모	최초지원과제 및 추가지원과제 <sup>주1</sup>
	33,500	17,277	
연구형태	개인연구 및 소규모 공동연구		
지원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(전임·비전임)</li> <li>■ 국·공립·정부출연·민간 연구소의 연구원</li> <li>■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</li> </ul>		
과제당 지원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개인연구 : 78백만원 내외 (<u>간접비 별도</u>)</li> <li>■ 공동연구 : 156백만원 내외 (<u>간접비 별도</u>)</li> </ul>		'12년부터 직접비, 간접비 분리지급
지원기간	3년(최대 6년(3+3 <sup>주2</sup> ))		
연구개시일 (예정)	2012.5	2012.9	
접수방법	연구사업 통합시스템( <a href="http://ernd.nrf.re.kr">http://ernd.nrf.re.kr</a> )에서 온라인 신청		
평가방법	패널별 토론평가 → PM 협의체 → 기초연구사업추진위원회		

※ 주<sup>1</sup> : 신규과제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'최초지원과제'와 '12년 종료과제 중 성과우수과제에 한해 평가를 거쳐 3년간 지원하는 '추가지원과제'로 구분

※ 주<sup>2</sup> : 3년차마다 평가를 통해 상위 15% 내외 우수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를 3년간 추가지원

## 2. 신청자격 관련 사항

가.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?

- ➔ 대학(교) 이공분야 교원(전임·비전임) 또는 국·공립·정부출연·민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서 향후 3년 이상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자는 누구나 3책5공의 범위 내에서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.
- ➔ 전임, 비전임 교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직급	비고
전임	교수, 부교수, 조교수, 전임강사	
비전임	연구교수, 계약교수, 초빙교수, 겸임교수, 석좌교수, 시간강사, Post-doc, 박사급연구원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임용된 계약교수 포함</li> <li>■ 전임 및 비전임의 세부 직급명은 해당 소속기관의 규정과 지침에 따름</li> </ul>

- ➔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 및 「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된 경우는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.
  - 단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가 신청 마감일 전일('12.6.00)까지 제한 조치가 종료될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.

나. 어떠한 경우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까?

- ➔ 3책 5공을 초과하는 경우,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.
  - 3책 5공제도란 「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연구자의 연구 전념을 위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제한한 제도입니다.

▶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(연구수행에의 전념) 제2항  
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.

1.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
2. 사전조사, 기획·평가연구 또는 시험·검사·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
3.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

- 상기 조항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뿐만 아니라 타부처 사업도 포함되며 과제 참여건당 1개의 과제를 수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정부 또는 전문기관과의 협약체결시 주관연구 책임자로 지정되지 않은 세부과제 책임자는 연구책임자로 간주하지 않으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과제의 참여자격은 해당사업을 관리하는 전문기관에 문의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제수는 최대 5개 과제입니다.
- ➔ 단, 다음 사업은 3책 5공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
-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「특정연구기관 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의 기본사업(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이 정관에 따라 그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)

※ 전문기관(한국연구재단 등)이 발주하지 않고 정부출연연구소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기본사업이라 합니다.

-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사업
- 「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」 및 「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」에 따른 BK21 사업
- 위탁연구과제 및 용역연구과제

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NTIS, <http://www.ntis.go.kr>)에서 조회 가능합니다.

➔ 한국연구재단 소관 사업 관련 참여제한 사항

- 1) 창의적연구사업: **주관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**
  - 연 2억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해당과제가 연구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
  - 기존에 수행중인 연간 2억원 미만 과제는 과제 종료 시까지 인정
  - ※ 단,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, 연구기획사업 또는 산업계와의 공동연구는 2단계 이후 참여 가능, 단계평가 결과 S등급 과제 또는 3단계 진입과제 연구책임자는 타사업 참여가능
- 2) 국가과학자지원사업: **주관연구책임자는 타과제 참여 불가**
  - 기존에 수행중인 과제는 연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정리
  - ※ 단, 국제공동연구 또는 해외로부터의 수탁연구 참여가능
- 3) 선도연구센터지원사업
  - **글로벌핵심연구센터(GCRC) 센터장은 1단계 연구기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신규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.**
  - 선정된 후 3책5공 초과과제 또는 2억원 이상 과제는 12개월 이내 종료 또는 이관
  - ※ 단, 1단계 기간 중에도 산학협력 또는 국제공동연구 사업은 참여가능
- 4) 글로벌프론티어사업
  - 연구단장은 **현 소속기관 내에서 타 업무 참여불가**
  - ※ 단, 본 사업 참여 전 기존의 진행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**6개월 내에 종료 또는 연구책임자를 교체**토록 함.
- 5) 2단계 두뇌한국(BK)21사업의 사업단장 자격요건
  - 과학기술 기초 및 응용분야
    - SRC, ERC, NCRC 등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 (단, 선정 후 6월 이내에 사임하는 경우 가능)
    - ※ 국가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5명 이상의 교수가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센터의 장으로서 SRC, ERC, NCRC, RRC, ITRC 등을 의미함
  - 전문서비스분야(경영학분야)
    - 경영학(MBA) 분야 연간 5억원 이상 국가 주도 대형 연구개발사업의 책임자는 사업단장을 겸할 수 없음(단, 선정 후 6월 이내 사임 시 가능)

**다. 연구참여자 구성 및 자격요건은 무엇입니까?**

- ➔ 연구과제는 주관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원, 연구보조원 등으로 구성되며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자격요건
주관연구책임자 (공동연구원)	대학 또는 전문대학 이공분야 교원(전임·비전임) 및 국공립·정부출연·민간 연구소의 연구원
참여연구원	박사급 연구원, Post-doc (학사급 및 석사급 연구원 포함)
연구보조원	학부생 및 석·박사과정생

- ➔ 핵심연구사업 중 공동연구의 경우, 주관연구책임자와 다른 기관 소속 교수급 연구원도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**라. 비전임 교원도 연구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?**

- ➔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주관연구기관(소속기관)의 인증이 필요하므로 신청 전에 주관연구기관과 반드시 고용계약(4대 보험 등을 포함한 전속 고용계약)을 체결해야 합니다.

### 3. 신청 관련 사항

가.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중인 사람은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?

- ➔ 중견연구자지원사업(핵심연구, 도약연구)을 수행중인 사람은 신규과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 또한,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에는 중견연구자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현재 수행중인 동일 사업단위의 사업연구는 신청 불가
- 도약연구를 수행중인 연구자는 핵심연구 신청 불가
- 수행중인 과제가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('13.6.30) 종료 시는 핵심연구 신청 가능

나.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이 신청 가능한 신규과제는 몇 개입니까?

- ➔ 현재 중견연구자지원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사람은 핵심연구 내 개인·공동연구 중 1개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다. 신규과제 중 '최초 지원과제'와 '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'의 차이는 무엇입니까?

- ➔ '최초 지원과제'란 올해 처음 지원되는 과제를 의미하며, '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'는 '12년 종료되는 과제 중 성과가 우수한 과제(주관연구책임자)를 향후 추가 지원(3년)하는 과제입니다.
- ➔ 성과우수 추가 지원과제는 '12년 8월 종료과제(공동연구)를 대상으로 하며, 3책5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수행중인 과제(공동연구)의 사업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.

라. 동일 사업 내 동시 신청이 가능합니까?

- ➔ 핵심연구사업 내 1개 과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. 단 최초지원 1개 과제와 추가지원 1개 과제는 동시에 신청하실 수 있으며, 모두 선정권일 경우에는 한 과제만 수행 가능합니다. 신청 가능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			핵심연구				
				개인	공동		추가지원(공동)	
				연구책임자	연구책임자	공동연구원	연구책임자	공동연구원
수행중인 사람	핵심 연구	개인	연구책임자	×	×	×	×	×
		공동	연구책임자	×	×	×	×	×
	공동연구원		×	×	×	×	×	
	도약 연구	도전	연구책임자	×	×	×	×	×
		전략	연구책임자	×	×	×	×	×
	핵심연구 종료과제	공동	연구책임자	○				×
공동연구원			○		×	○		
수행하지 않는 사람				○		×		

※ ○ : 가능, × : 불가능

- ➡ 단, 핵심연구 내 중복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모든 신청과제는 무효처리됩니다.
- [사례1] 핵심연구 내 개인연구 1개 과제, 공동연구 1개 과제(공동연구원 포함)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
  - [사례2] 핵심연구(공동연구) 공동연구원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, 핵심연구 신청시(공동연구원 포함) 모두 무효처리
  - [사례3] 도약연구 수행 연구자가 핵심연구 신청시 무효처리
  - [사례4] 핵심연구 내 2개 과제 이상 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 
(단, 최초지원, 추가지원 각 1개 과제 동시신청 가능)

#### 4. 연구계획서 관련 사항

가. 연구자 번호는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- 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(<http://www.kri.go.kr>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→ 상단 메뉴 중 연구업적등록 클릭 → 기본 인적 사항에서 '연구자 등록번호' 확인

나. 위탁연구과제를 편성할 수 있습니까?

- ➔ 핵심연구는 위탁연구를 불허합니다.

다. 교수급 연구원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까?

- ➔ 핵심연구사업 중 개인연구는 개인단위의 연구이므로 교수를 참여연구원으로 편성하는 것을 불허하며, 공동연구는 교수를 공동연구원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.

라. 외국인은 영문으로 신청용 연구계획서 작성이 가능합니까?

- ➔ 부분적으로 가능합니다. 단, 신청용 연구계획서 중에서 '연구내용' 부분은 영문으로 작성 가능하나 일정한 양식이 정해져 있는 <표>부분은 한글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
마. 기관코드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- ➔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 통합시스템시스템(<http://ernd.nrf.re.kr>)의 첫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바. 연구신청자의 개인정보 및 연구업적은 어떻게 등록합니까?

- ➔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됩니다.(<http://www.kri.go.kr>)

사. 연구비 관련 표의 칸 수를 늘릴 경우 자동합산이 되지 않습니다.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?

- ➔ 각 항목에 기재 내용을 추가할 경우, (복사-붙여넣기)등을 이용해서 칸 수를 늘려 입력하시면 됩니다. 이 경우 합계란의 블록계산을 다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아. 대표적 연구업적에 어떤 내용을 기술해야 합니까?

- ➔ 연구계획서 중 주관연구책임자 이력사항의 '대표적 연구실적'에 기술된 내용(논문명/특허명/기타)을 요약하여 2페이지 이내로 기술하시면 됩니다.

자. 연도별 연구비를 기재하는 란이 3개('12~'14년) 있습니다.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?

- ➔ 연구계획서의 '표지'와 '연구비 총괄표'상의 연구비는 연구하고자 하는 기간 전체의 연구비를 입력하고 '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'에는 1차년도 연구비만 기재하시면 됩니다.
- ➔ 예를 들어, 핵심연구사업 수행 기간이 최대 3년이므로 3년을 신청할 경우,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 모두에 3년치의 연구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

차. 연구계획서 중 연구내용 부분은 반드시 30쪽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까?

- ➡ 연구내용 부분은 반드시 30쪽 이내로 작성하셔야 하며, 초과할 경우 평가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카. 신청시 간접비는 작성해야 합니까?

- ➡ 연구과제 선정 후 일괄적으로 간접비를 알려 드릴 예정이오니, 신청자께서는 간접비를 기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

타. 연구계획서 표지 중 전공은 무엇을 입력하는 것입니까?

- ➡ 의약학 분야의 과제 신청시만 해당되며, 의·치·한의대에 소속된 연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신청 계획서 1페이지 '전공'부분에 본인의 소속 '교실'명을 작성하시면 됩니다. 만약 소속 교실이 없으면 본인의 세부전공을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  - 과제 신청 전에 KRI(<http://kri.go.kr>) 시스템에 접속하시어 세부전공(교실)을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변경 방법은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5. 연구비 관련 사항

가. 인건비와 직접비 편성비율 및 각각 산정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까?

➔ 인건비와 직접비의 편성비율은 따로 없으며, 신청자가 임의로 정해서 신청하면 됩니다.

나. 인건비 계상 시 참여율은 어떻게 산출합니까?

➔ 참여율은 참여연구원의 연봉 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합니다. 참여율은 총 연봉의 10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해당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참여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차등계상이 가능합니다.

다. 미지급용 인건비는 어떻게 계상해야 합니까?

➔ 최대 30%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, 초과계상하면 업로드시 오류가 발생합니다. 단, PBS 적용기관 소속 연구자는 미지급 인건비를 계상하실 수 없습니다.  
 ➔ 외부인건비의 미지급 인건비는 표에 작성하지 않으며 연구비 총괄표 등에만 기재합니다.

라. 학생인건비 폴링제란 무엇이며 소속기관이 폴링제 적용 기관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?

➔ 학생 인건비 폴링제란 대학 연구인력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제도로써 완전 폴링제 및 부분 폴링제가 있습니다. 소속기관의 폴링제 적용 여부는 산학협력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 
 ➔ 단, 핵심연구사업 중 공동연구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만 학생 인건비 폴링제가 적용됩니다.

마. 학생 인건비 폴링제로 계상한 인건비의 잔액이 발생한 경우, 어떻게 처리합니까?

➔ 폴링제 실시 기관은 인건비 총액으로 계상·집행하므로 연구보조원을 추가하거나 차년도로 이월·집행할 수 있으며 직접비로 전용도 가능합니다.

바. 학생인건비 man/month 투입총량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?

➔ man/month 투입량은 해당 학위과정생의 1개월 간 예상 참여율에 근거하여 산출하면 됩니다. 예를 들어 해당과제 참여율이 90%인 석사과정생 A의 참여기간이 12개월이고, 참여율이 20%인 박사과정생 B의 참여기간이 4개월인 경우 man/month 투입총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.

■ 박사과정 1명, 석사과정 1명을 연구보조원으로 활용시

- 석사과정A를 12개월 동안 90% 활용시 ⇨ man-month 투입총량은 12개월×90% = 10.8  
 그러므로 1,800(천원) × 10.8 = 19,440천원
- 박사과정B를 4개월 동안 20% 활용시 ⇨ man-month 투입총량은 4개월×20% = 0.8  
 그러므로 2,500(천원) × 0.8 = 2,000천원
- 이를 합산하여 연구계획서 양식A602의 '박사과정'에 다음과 같이 기재

기관명	과 정	월 급여	man-month 투입 총량	총 액	비 고
*****	박사과정	2,500	0.8	2,000	
*****	석사과정	1,800	10.8	19,440	

사. 연구수당은 어떻게 계상합니까?

- ➔ 지급·미지급용 내·외부 인건비 총액의 최고 20%까지 자율적으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.

아. Post-doc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무엇입니까?

- ➔ 소속기관의 Post-doc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편성하면 됩니다.

자. 핵심연구사업 중 공동연구의 연구비는 어떻게 지급됩니까?

- ➔ 주관연구책임자 소속기관에 연구비 전액을 지급하며, 해당 기관은 연구관리 및 연구비 관리 일체를 담당하게 됩니다. 공동연구원은 희망시 연구비 카드를 통하여 연구비 집행이 가능하고 사용실적은 주관연구책임자가 관리해야 합니다.